

해외 법제 최신 동향

제 목 : 독일, 형법 상의 외국원수 등 모욕죄 폐지

형법상의 외국원수 등 모욕죄가 터키와의 외교분쟁 과정에서 2018. 1. 1.부터 폐지됨

1 해당 조문

- 독일 형법(Strafgesetzbuch)은 외국에 대한 범죄행위 중의 하나로서 제103조에서 외국 원수, 외교사절 등을 모욕(소위 'Majestätsbeleidigung')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, 근거 없는 중상적인 행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

2 폐지 배경

- 2016. 3. 31. 독일의 방송 진행자인 뵘머만이 ZDF 방송에서 터키 정부의 언론 통제적 통치 행태와 관련하여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시를 읊으면서 터키와의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고, 터키 정부는 독일의 위 형법 조문을 근거로 뵘머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함
 - ※ 이후 마인츠 지방검찰청에서 실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, 2016. 10. 단순한 풍자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종결됨
- 위 조문이 쟁점화되면서 법조계, 정치권 등으로부터의 위 조문 폐지 요구가 거세졌고,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는 전근대적인 과잉 입법으로 형법 내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함을 이유로 폐지됨

3 폐지 경과

- 2016. 4. 14. 위 조문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연방하원에 제출됨
- 2017. 6. 1. 연방하원, 위 조문 폐지 법률안 의결
- 2017. 7. 7. 연방상원, 위 법률안 의결
- 2018. 1. 1. 위 조문 폐지 법률안 시행 ☐